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법 」(법률 제8423호 전면개정 2007. 05. 11)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전면 개정 된 상위법의 내용 및 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련한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15조 제1항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제15조제1항의----------.